



규정

사회봉사 운영 규정


문서번호	TWP-A309
제정일자	2003. 07. 01.
개정일자	2023. 02. 28.
개정번호	7
페이지	1/6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기구
- 제3장 운영위원회
- 제4장 사회봉사 기관 및 활동 인정 기준
- 제5장 학생의 사회봉사 운영
- 부칙
- 별첨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2003. 07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	교무학생처장	기획예산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309
		제정일자	2003. 07. 01.
	사회봉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
		개정번호	7

[전문개정 2017.06.23.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봉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사회봉사단은 이 대학교의 교훈인 사회봉사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봉사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
2. 국내·외 사회봉사 기획 및 운영
3. 교직원 사회봉사 지원
4.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
5. 그 외에 사회봉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2장 기구

제3조(단장 및 부단장) ① 사회봉사단의 단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하며, 단장은 사회봉사단을 대표한다.<개정 2021.02.26., 2023.02.28.>

② 부단장은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사회봉사단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을 지원한다.<개정 2021.02.26.>

제4조(행정조직 및 예산) ① 사회봉사단의 업무는 교무학생처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21.02.26., 2023.02.28.>


② 사회봉사단의 운영관리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교무학생처 예산에 편성한다.<개정 2021.02.26., 2023.02.28.>

③ 사회봉사단의 운영관리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사회봉사위원회) ① 사회봉사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21.02.26., 2023.02.28.>

	규정	문서번호	TWP-A309
		제정일자	2003. 07. 01.
	사회봉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
		개정번호	7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 간사는 교무학생처 담당 행정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1.02.26., 2023.02.28.>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지원한다.

1. 사회봉사 관련 주요사항 심의
2. 사회봉사 운영 규정 심의
3. 교내·외 사회봉사 관련 프로그램 심의
4. 교직원 및 학생 단체봉사활동 지원
5.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 지원
6. 그 밖에 사회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위원장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9조(주관부서) ①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사회봉사 주관부서인 교무학생처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21.02.26., 2023.02.28.>

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4장 사회봉사 기관 및 활동 인정 기준

제10조(사회봉사 인정기준) 사회봉사 기관 및 활동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기관 및 단체
2.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, 기관 및 단체
3. 지역사회 행정관청에서 추천하는 시설, 기관 및 단체
4.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, 기관 및 단체
5. 이 대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, 기관 및 단체

	규정	문서번호	TWP-A309
		제정일자	2003. 07. 01.
	사회봉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
		개정번호	7

- 6. 헌혈<개정 2018.01.18.>
- 7. 군복무 사회봉사 경력 인정(단, 군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<개정 2021.02.26.>
- 8.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활동<개정 2021.02.26.>

제5장 학생의 사회봉사 운영

제11조(신청 및 절차) ① 개인의 사회봉사 신청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대학교의 입학과 동시에 인정한다.

- ② 개인 사회봉사 후에는 사회봉사확인서(개인용)를 제출 한다.
- ③ 학과나 동아리 등에서 단체로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사회봉사계획서(단체용)를 미리 제출한다.
- ④ 정기 단체봉사 종료 후에는 사회봉사확인서(단체용), 사회봉사참가자명단(단체용)을 즉시 제출하고 사회봉사결과보고서(단체용)는 사업 종료 후 연 1회 제출한다.
- ⑤ 수시 단체사회봉사 종료 후에는 사회봉사확인서(단체용), 사회봉사참가자명단(단체용), 사회봉사결과보고서(단체용)를 즉시 제출한다.
- ⑥ 학과나 동아리 등에서 단체로 사회봉사를 할 경우 교통비, 식비, 재료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

제12조(교과운영) 사회봉사 교과목은 ‘사회봉사’로 하며 재적기간 중 최대 2학점까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.<개정 2021.02.26.>

제13조(학점/기재) ① 사회봉사 학점은 제10조의 사회봉사 활동 인정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봉사했을 경우 최대 2학점으로 한다.

- ② 사회봉사는 성적증명서 하단에 정규학기 이외에 사회봉사학기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수자에 한하여 P급제로 표기한다.
- ③ 개인봉사의 경우 봉사활동평가 점수가 40점 이하 일 때에는 봉사 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④ 헌혈 1회는 4시간 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.<개정2017.12. >

제14조(사회봉사 기간) ① 이 대학교에 재학 중 시행한 봉사활동만을 인정하며, 대학 입학 전 또는 휴학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보칙)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

	규정		문서번호	TWP-A309
			제정일자	2003. 07. 01.
	사회봉사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23. 02. 28.
			개정번호	7

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첨

- [별지 제1호 서식] 사회봉사확인서(개인용)
- [별지 제2호 서식] 사회봉사계획서(단체용)
- [별지 제3호 서식] 사회봉사확인서(단체용)
- [별지 제4호 서식] 사회봉사참가자명단(단체용)
- [별지 제5호 서식] 사회봉사결과보고서(단체용)

[별지 제1호 서식]

사회봉사확인서(개인용)

학과		학번		성명	
봉사기관 정보	봉사기관명				
	담당자명		담당자 직위		
	전화번호		FAX		
봉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일)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일)				
봉사시간	: ~ : (1일 시간, 총 시간)				
	: ~ : (1일 시간, 총 시간)				
봉사활동 평가	항 목	배 점	평 가	사 유	
	성 실 성	25			
	봉 사 정 신	25			
	만 족 도	25			
	책 임 감	25			
	계	100		사유는 10점 이하시 기재	
담 당 책 임 자 소 견					

위와 같이 상기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명

(직인)

사회봉사계획서(단체용)

학과, 동아리 명		수 신 :
지도교수		발신일자 : . .
<p>1. 봉사 장소(기관명) 및 일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봉사 기관 :▪ 봉사 장소 :▪ 봉사 일시 : <p>2. 참가인원 및 활동내용 (간략히 기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참가 인원 :▪ 활동 내용 : <p>붙임: 사회봉사활동 참가자명단(학과, 학번, 성명, 연락처 기재)</p> <p>3. 예 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 도 교 수 (인)</p>		

사회봉사참가자명단(단체용)

연번	학과	학년	학번	성명	서명	봉사시간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16						
17						
18						
19						
20						

◆ 봉사활동 장소 :

◆ 봉사활동 일자 :

위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◆ 봉사활동 기관명 :

◆ 확인자(담당자) 성명 : (인)

[별지 제5호 서식]

사회봉사결과보고서(단체용)

봉사활동 성과		
개선점 및 향후 계획		
봉사활동 사진		
	내용:	내용:
	내용:	내용:

위와 같이 사회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지도교수 :

(인)

사회봉사단장 귀하